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71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8.

발 의 자 : 박주민 · 전용기 · 김한규
한준호 · 김용민 · 김용만
김태선 · 김상욱 · 장철민
이재정 · 이용우 의원
(11인)

제안이유

법원, 검찰청, 경찰청 등의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 등에 관여하는 기관인 만큼 해당 기관의 장 및 소속 고위공직자의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. 그러나 현행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 해당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 소속된 고위공직자 등의 수사대상 범죄를 일부 범죄에만 한정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. 이에 고위공직자 정의와 공소제기 대상에 법원·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고, 대법원장 및 대법관, 검찰총장, 판사 및 검사,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, 법원·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수사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법원·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함(안 제2조제1호).
- 나. 대법원장 및 대법관, 검찰총장, 판사 및 검사,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, 법원·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제3호).
- 다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무상 공소제기와 그 유지의 대상에 법원·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함(안 제3조제2호).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말한다”를 “말하고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”로 하며,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가족의”를 “제2조제1호다목, 카목, 파목, 하목, 러목의 죄에 해당하는”으로, “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”를 “본인이”로, “죄에 한정한다”를 “모든 범죄를 말한다”로 한다.

러. 법원·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
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하목에”를 “하목, 러목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고위공직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(職)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 ~ 더. (생략)	가. ~ 더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러. 법원·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</u>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“고위공직자범죄”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. 다만, <u>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.</u>	3. ----- ----- ----- ----- - <u>말하고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.</u> ---제2조제1호다목, 카목, 파목, 하목, 러목의 직에 해당하는----- ----- <u>본인이</u> ----- <u>모든 범죄</u> 를 말한다.

가. ~ 아. (생 략) 4. · 5. (생 략) 제3조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) ① 고위공직자 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“수사처”라 한다)를 둔다. 1. (생 략) 2. 제2조제1호다목, 카목, 파목, <u>하목에</u>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 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 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· ③ (생 략)	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 4. · 5. (현행과 같음) 제3조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하목, 러목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-